

인천 미래형혁신학교 미래학교 모델 개발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- 서울교육대학교 미래교육센터 업무협약서

인천광역시교육청과 서울교육대학교는 ‘인천 미래형혁신학교 미래학교 모델 개발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인천광역시교육청(이하 교육청)과 서울교육대학교(이하 서울교대)의 공동 협업을 바탕으로 ‘인천 미래형혁신학교 미래학교 모델 개발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.

제2조(사업수행) 교육청이 서울교대에 위탁하는 사업은 서울교육대학교 미래교육센터에서 총괄 수행한다. 협약 이후 조직개편 등 사정 변경 발생으로 인해 수행 주체를 변경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양 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사업내용) ①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‘2021년 미래형혁신학교 미래학교 모델 개발 사업 계획(안)’ 과 같다.

1. 미래형 혁신학교(초등) 교육과정 컨설팅 개발 지원
 - 학교별(초등3교) 교육과정 TF협의회를 통한 교육과정 공동 연구
 - 연구주제에 맞는 교육과정 모델 지원 및 이론, 선진사례 제공
2. 인천 미래형혁신학교 평가 지표 개발 및 공동성장보고서 작성
 - 미래형혁신학교 운영 활동 평가를 위한 지표 및 요소 제공
 - 인천 미래학교 모델에 대한 공동성장보고서 작성
 - 미래형혁신학교-미래교육센터 공동연구 성과물 발표회 운영
3. 예비교사 교육봉사활동

② 제1항의 기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양 기관이 협의하여야 한다.

제4조(협약기간) 이 업무 협약의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단, 본 사업의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5조(사업비 지급 및 집행) ① 교육청은 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해당 금액을 업무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서울교대에 지급한다. 단, 정해진 기일까지 사업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 교육청은 서울교대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서울교대는 교육청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, 「특별교부금 교부 운용기준」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·집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사업비 관리) ① 서울교대는 예산을 관리·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서울교대는 지급받은 예산을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사업비 정산) 서울교대는 교육청이 지급한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업 결과물 제출) 서울교대가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학교별 공동성장보고서 3종
2.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

제9조(협약내용의 변경 등) ① 협약 내용 중 주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시 서울교대는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서울교대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 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한다. 단, 항목(인건비, 평가, 사업 운영, 외부용역비)별 예산액의 25%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.

제10조(협약의 체결 등) ① 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.

1. 서울교대가 협약 내용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
2.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 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제1항의 경우 이미 지급한 예산과 유·무형적 발생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제11조(권리·의무 양도 제한) 서울교대는 교육청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 협약에 의한 권리·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본 협약 체결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협약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협약의 운영)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청의 해석에 따른다.

제4조(협약서의 보관)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교육청과 서울교대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3월 24일



교육감 도성훈

도성훈



서울교육대학교
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

총장 임채성

임채성